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정진욱 · 정준호 · 안도걸
이개호 · 전진숙 · 이언주
이성윤 · 박성민 · 김종민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3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u>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② ----- . ---- --- <u>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u> <u>은 정관으로 정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 며 <u>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 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 춘 것으로 <u>본다.</u>	② ----- -- <u>연임할 수 있다.</u> ----- ----- ----- <u>보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u> <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u> <u>기간으로 한다-</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